

민간 개방화장실 지정·운영 지원

공중화장실 신축이 어려운 주요 가로 및 도심권 지역의 민간건물 화장실 개방 유지 및 지정 확대 유도로 화장실 이용시민 편의도모

예산총괄

(단위 : 천원)

2014최종예산 (A)	2015예산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500,000	500,000	-	-

사업설명

(단위 : 천원)

사업목적

- 도심권 민간건물 화장실의 개방 지속 유지
- 공중화장실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서 민간개방화장실 지정·운영으로 시민편의 제공

사업근거
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(개방화장실)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보조금 지급)
-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(관리운영비등의 지원)

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25개 자치구
- 사업기간 : 2015.1.1~12.31
- 사업내용 : 자치구의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건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
- '15년도 소요예산 : 500,000천원
- 재원분담 비율 : 시비100%

2015년도 예산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499,740	500,000	500,000	-
자치단체경상보조금	499,740	500,000	500,000	-
관리운영비 등 지원	499,740	500,000	500,000	-

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

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

- 민간개방화장실 780개소 차등지원(개방시간, 번기수, 청소상태 등에 따라 상, 중, 하 구분)
(개소당 월평균 53.4천원, 월 41,666천원)
- 780개소 × 53,400원(월평균) × 12월 = 500,000천원

사업추진 절차

- 계획수립 및 시달(시) → 지원대상 신청(자치구) → 지원대상 심사 및 사업비 교부(시) → 보조금 집행(자치구) →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 → 정산

사업효과

-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

2012년도	· 민간개방화장실 25개구 890개소 지원
2013년도	· 민간개방화장실 25개구 774개소 지원
2014년도	· 민간개방화장실 25개구 777개소 지원

- 향후 기대효과 : 공중화장실 건립이 어려운 지역의 개방 지정으로 이용 시민 편의 제공

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- 추진방향
 - 도심권 민간건물 화장실의 개방 유지
 - 공중화장실 건립이 어려운 지역의 개방 지정
-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획수립	2015.02		
지원대상 선정 및 제출	2015.01~02		
지원대상 심사 및 교부	2015.03~12	500,000	월별교부
보조금 집행	2015.03~12		
정산	2015.12		

실·국	부서명	담당자			
복지건강본부	생활보건과	공중위생팀장	박난숙 (2133-7669)	주무관	김학춘 (2133-7670)

-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.

<http://opengov.seoul.go.kr/sanction>